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46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8.-2023. 5. 21.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최정민	1985.○.10	채권(예금)	₩47,790,000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2	황진하	1974.○.13	채권(예금)	₩47,790,000	천안 서북구 서부 8 길
3	권오현	1972.○.30	채권(예금)	₩31,212,000	서울 종로구 동숭 3 길
4	변윤영	1974.○.17	채권(예금)	₩31,860,000	세종 한누리대로
5	최병서	1988.○.08	채권(예금)	₩47,790,000	충남 아산시 서부북로
6	비비코리아(김은경)	1968.○.25	채권(예금)	₩47,790,000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7	김영은	1968.○.25	채권(예금)	₩6,156,000	수원 팔달구 팔달문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2103)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